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08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㊞

2016년 5월 23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를 "「지방자치법」"으로,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"를 "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"으로, "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"를 "서울특별시 광진구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구 본청"을 "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 본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행정관리국"을 "행정국"으로 하고, 제2항 중 "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"을 "감사담당관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(행정관리국)"을 "(행정국)"으로 하고, 제1항 중 "행정관리국"을 "행정국"으로, "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"를 "문화체육과, 교육지원과 및 디지털정보과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행정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 각 호 중 제18호,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
19.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
20.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"기획예산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디지털정보과"를 "기획홍보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재무과"로 하고, 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17호를 삭제하고,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4.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
19. 사회적기업 발굴・육성에 관한 사항
20. 홍보・보도에 관한 사항

제6조제1항 중 "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"를 "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르신복지과"로 하고, 제2항제11호 및 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어르신・여성복지・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25.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
26.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항 중 "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지적과"를 "도시계획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안전치수방재과"를 "안전치수과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법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"로 하고, 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"를

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**「지역보건법」 제9조**”를 “**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**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**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**”를 “**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에 따라**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기구의 변경·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“행정관리국”은 “행정국”, “정책홍보담당관”은 “기획홍보과”, “기획예산과”는 “기획홍보과”, “일자리경제과”는 “지역경제과”, “도시디자인과”는 “도시계획과”, “지적과”는 “부동산정보과”, “안전치수방재과”는 “안전치수과”, “보건행정과”는 “보건위생과”로 각각 개정하고,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“일자리정책과”, “어르신복지과”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“일자리경제과”, “사회복지과”는 각각 “일자리정책과”, “어르신복지과”로 개정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교육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≪신 · 구조문 대비표≫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----------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----------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 ----------	제1조(목적) ----------「지방자치법」 ----------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」---------- 서울특별시 광진구 ----------
제2조(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 등) ① 구 본청 ----------	제2조(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 등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"구"라 한다) 본청 ----------
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---------- 행정관리국----------	제3조(국 및 담당관의 설치) ① ---------- 행정국----------
② ---------- 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------	② ---------- 감사담당관------
제4조(행정관리국) ① 행정관리국----------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 ------	제4조(행정국) ① 행정국---------- 문화체육과, 교육지원과 및 디지털정보과------
② 행정관리국장 ---------- 1. ~ 17.(현행과 같음) 〈신 설〉 〈신 설〉 〈신 설〉	② 행정국장 ---------- 1. ~ 17.(현행과 같음) 18.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9.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20.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제5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----- 기획예산과, 일자리경제과, 재무과, 디지털정보과,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구정의 기획·조정에 관한 사항 2.~ 3. (현행과 같음) 4.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5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정보화 기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. (현행과 같음) 〈신 설〉 〈신 설〉	제5조(기획경제국) ① ---------- 기획홍보과, 지역경제과, 일자리정책과, 재무과,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 1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.~ 3. (현행과 같음) 4.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5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삭제 18. (현행과 같음) 19.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에 관한 사항 20. 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복지환경국) ① ----------------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-------------- --	제6조(복지환경국) ① ----------------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어르신복지과, --
② (현행과 같음) 1.~ 10. (현행과 같음) 11. 노인·여성복지·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2. ~ 24. (현행과 같음) 25.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〈신 설〉	② (현행과 같음) 1.~ 10. (현행과 같음) 11. 어르신·여성복지·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2. ~ 24. (현행과 같음) 25.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26.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
제7조(도시관리국) ① ------------------ ------ 도시디자인과, 건축과, 지적과 ---- --	제7조(도시관리국) ① ------------------ ------ 도시계획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, --
제8조(안전건설교통국) ①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안전치수방재과 - --	제8조(안전건설교통국) ①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안전치수과 ----- --
제10조(설치) ① 법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	② 제1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 -- ----------
제12조(소관사무) -------「지역보건법」 제9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제12조(소관사무) -------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3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·제4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---- ---	제13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-----------
제14조(직무)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통·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 〈신 설〉	제14조(직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 -- -- ------------------ ②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,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.